

의안
번호

355

2025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2025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1.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355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07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- 성북복지재단의 설립과 안정적인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재산 지원 필요
- 성북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, 복지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복지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역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상승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 필요

3. 주요내용

- 출연대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
 - 설립일자 : 2025. 4. 예정
 - 설립근거 : 「민법」 제32조 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)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위 치 : 성북구 정릉로48길 35
 - 조직구성 : 이사회, 감사, 사무국(1국 3팀)
- 출연내용 :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기본재산, 보통재산(인건비 및 운영비)출연
- 출 연 금 : **총 2,739,377천원**
 - 기본재산 : 2,000,000천원
 - 설립시 1회 출연 (법인 설립 허가 요건)
 - 보통재산 : 739,377천원

구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합 계
금액	571,780	148,097	19,500	739,377

4. 참고사항 (관계법령)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(재정지원)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출연동의안은 성북복지재단의 안정적인 기반마련과 운영을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것임

□ 주요내용

-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은 성북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2025. 4월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2)재정지원 규정에 따라
- 2025년도 출연금은 27억 3,937만원으로 성북복지재단 기본재산 20억원과 보통 재산으로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항목에 7억 3,937만원을 편성하였음
 - 기본재산은 1회 출연(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통 기준³⁾ 20억원)으로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 - 보통재산은 '25. 4~12월, 9개월분의 성북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1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, 사업비로 산정하여 출연할 예정임.

* 인건비 571,780천원(총14명 9개월분), 운영비 148,097천원, 사업비 19,500천원

-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지원)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 - 3) 「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통기준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출연기준액 확정·시행 계획」(2016.12.1.시행) 사회복지법인 20억원 이상, 재단법인 20억원 이상, 사단법인 없음

※ 서울시 타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

구분	설립년도	출연금	구분	설립년도	출연금
마포복지재단	2021년	20억 원	노원복지재단	2011년	11년 15억원 12년 5억원
광진복지재단	2019년	19년 20억 원, 20~22년 10억 원	구로희망복지재단	2009년	20억
용산복지재단	2016년	20억 원	강서복지재단	2012년	20억
양천사랑복지재단	2005년	20억 원	동작복지재단	2004년	20억
종로복지재단	2024년	20억원	강남복지재단	2014년	20억

- 서울시에 설립된 타 복지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기본 20억으로 최고 30억원

□ 종합의견

- 본 출연 동의안은 성북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절차 등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동의를 출연 대상기관인 성북복지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됨